

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588호 2016. 2. 15.(월)

선	기관의 장
람	

- 【조 례】
- 【규 칙】
- 【훈 령】
- 【예 규】

제232호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 관리 지침 일부개정규정 1

【고 시】

제2016-18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15

제2016-19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17

【공 고】

제2016-192호 공인 신조 및 폐기 공고 19

제2016-194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을 위한 공람·공고 ... 20

제2016-201호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1

제2016-205호 공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6

제2016-224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30

회 람							
--------	--	--	--	--	--	--	--

발행 공주시 (편집 미디어담당관 ☎ 840-2052)

《 시 보 발 행 안 내 》

본 「시보」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2조, 제13조 및 공주시보 발행규정에 의거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제정 및 개·폐사항, 인사, 공고, 고시, 의회의 집회, 개회, 휴회 및 회기의 연장, 의사내용 등을 게재토록 되어 있습니다.

매월(1일, 15일) 2회 또는 수시 발행되오며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배부는 시산하 행정기관 및 이·통장님에게 배부됩니다.
이·통장님께서서는 본 「시보」에 게재된 내용을 이웃 등에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별도 편철 하시어 1년 동안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고도보존 및 육성 관리 지침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공 주 시 장

오 시 덕

2016년 2월 15일

공주시 예규 제232호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 관리 지침 일부개정규정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 관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한식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한식기와, 벗짚, 목재, 흙 등 자연재료로 마감된 우리나라 전통양식”을 “한식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으로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2]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사업 지원기준 (조례 제17조제2항 관련)

1. 한옥

구분	현행	개정안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수) 필지의 중심공간에 마당을 설치하여야 하며, 대청은 마당에 면해 배치되어야 한다. • (권장) 건축물은 ‘ㄴ’, ‘ㄷ’, ‘ㄹ’ 자 등의 형태로 구성하고, ‘ㄱ’, ‘ㅁ’ 등의 형태는 피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청과 되는 마당에 면해 배치되어야 한다.(준수) • 건축물은 ‘ㄴ’, ‘ㄷ’, ‘ㄹ’ 자 등의 형태로 구성하고, ‘ㄱ’, ‘ㅁ’ 등 특이한 형태는 피하도록 한다.(준수) • 건축물의 평면은 되도록 ‘ㄱ’ 자형으로 한다.(권장) • 한옥의 평면은 겹집 형태보다는 가능한 홑집 형태로 한다.(권장)
마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수) 대지면적 20% 이상의 마당이 확보되어야 한다. • (준수) 마당 하부에 지하가 있는 경우 조경을 위하여 최소 20cm 이상의 인공지반을 조성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당을 성토하여 자연배수를 고려하도록 한다.(권장) • 본채와 대문 또는 필지와 면한 도로 사이에 마당을 설치하여야 한다.(준수) • 마당은 건축면적의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준수) •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지의 규모와 형태상 부득이하게 규정된 크기의 마당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 마당을 축소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에 면한 정면부에 한옥의 개방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배치·설계하여야 한다.(허용) • 마당을 시멘트, 아스팔트, 시멘트블록 등으로 포장하는 것을 금한다.(금지) • 마당은 백토로 포장하도록 한다.(권장) • 전돌이나 화강암 재질의 박석, 잔디, 경화 마사토 포장 등은 허용한다.(허용)
기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수) 기단의 높이는 1m가 넘지 않아야 하며, 화강석 혹은 자연석과 같은 석재로 마감하여야 한다. • (권장) 기단의 상부는 전돌 혹은 포방석 등으로 마감하는 것을 권장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단은 가능한 한옥의 일반적인 형태인 석축기단으로 한다.(권장) • 와적기단, 전축기단, 토단은 허용한다.(허용) • 나무데크나 가구식 기단의 설치 금한다.(금지) • 기단은 자연석이나 장대석, 전돌, 기와, 흙, 경화마사토 등으로 마감하여야 한다.(준수) • 기단의 외부마감 시 자연석과 장대석, 전돌, 기와 등 마감재료의 크기와 형태가 적절해야 한다.(준수) • 콘크리트와 혼합하여 마감하거나 광택이 있는 외장도료의 도포를 금한다.(금지) • 자연석을 쓸 경우에 강돌이나 호박돌 등 둥근 돌의 사용은 금한다.(준수) • 기단은 단층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지형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다층기단이나 계단식 기단을 설치할 수 있다.(준수) • 기단의 높이는 30~90cm 이내로 하여야 하며, 지붕부와 벽체부의 높이를 고려하여 정한다.(준수) • 기단은 차마끝선보다 안쪽에 위치해야 한다.(준수) • 기단의 끝선은 차마끝선 안으로 45cm 내외로 이격하도록 한다.(권장) • 주춧돌과 기단은 자연배수를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준수) • 주춧돌(초석)은 전통적인 형태의 범위 내에서 선택하도록 한다.(권장) • 고막이석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고막이석 대신 전돌로 막음하여도 된다.(허용)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수) 한옥은 기둥 및 보가 목구조 방식이고 한식지붕틀로 된 구조여야 한다. • (준수) 서까래는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최소 1m 이상 돌출되어야 한다. • (권장) 구조에 사용되는 목재는 고재의 사용을 권장한다. • (권장) 오일스테인 등 목재보호용 용액과 갈색페인트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 (권장) 기단 하부는 목구조가 아닌 다른 구조의 사용이 가능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단의 상부바닥에 매립형 조명을 설치할 수 있다.(허용) • 한옥은 기둥 및 보가 목구조방식이고 한식지붕틀로 된 구조여야 한다.(준수) • 전통적 소재를 사용하더라도 방화·방수·단열·안전 등을 고려해야 한다.(준수) • 방수시트, 내수합판, 단열재 등의 사용이 가능하나, 난연 또는 불연 소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준수) • 결구과정에서 철물이나 현대적인 소재를 사용할 경우, 밖으로 드러나지 않아야 한다.(준수) • 지붕틀과 기둥, 보의 결구방식은 못과 같은 철물을 사용하지 않는 전통적 이음 맞춤의 결구방식을 사용하도록 한다.(권장) • 지붕은 전통적인 습식공법(적십과 알매 흙)을 원칙으로 하나 단열재와 방수성능을 보강한 건식공법도 사용이 가능하다.(허용) • 구조에 사용되는 목재는 가능한 한 고재를 사용하도록 한다.(권장) • 목재 고유의 재질과 색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오일스테인 등 목재 보호용 용액의 사용이 가능하다.(허용) • 전통구들 온돌을 원칙으로 하나 현대식 온돌의 사용도 가능하다.(허용) • 기단 하부는 지하공간 또는 별도의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금지) • 하양식 구조와 인자대공을 사용할 수 있다.(허용)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수) 한옥은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 의해 해당 필지에 지정된 최고높이 및 최고층수에도 불구하고 최고 층수를 1층으로 제한한다. 다만 4m이상의 도로에 접한 필지는 2층 한옥의 건축이 가능하다. • (준수) 마당에서 도리하단까지 최고높이는 4m(2층의 경우 7m)를 넘지 않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옥은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 의해 해당 필지에 지정된 최고높이 및 최고층수에도 불구하고 최고 층수를 1층으로 제한한다. 다만 4m이상의 도로에 접한 필지는 2층 한옥의 건축이 가능하다.(허용) • 마당에서 도리하단까지 최고높이는 4m(2층의 경우 7m)를 넘지 않아야 한다.(준수) • 한옥의 깊이는 가능한 6m 이내여야 한다.(권장)
지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수) 용마루부분을 제외한 지붕 높이는 도리하단을 기준으로 한옥 깊이의 0.3 이상이되 0.5이하가 되도록 한다. • (준수) 용마루, 내림마루, 추녀마루의 적새, 착고부고는 전통한옥의 구법을 준수하며 적새의 경우 5단을 넘지 않도록 한다. • (준수) 기와는 전통한식기와 또는 전통기와와 같은 플크기를 가지며 검은색으로 마감된 시멘트기와를 사용할 수도 있다. • (준수) 지붕의 형태는 팔작지붕, 맞배지붕, 우진각 지붕 등 전통적인 지붕형태를 따르도록 하며 외경사 및 용마루가 없는 지붕 형태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준수) 유약을 처리하여 반짝이는 기와 및 검은 색이 아닌 기와의 사용을 금지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까래는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최소 1m 이상 돌출되어야 한다.(준수) • 서까래가 1.5m 이상 돌출되는 것을 권장한다.(권장) • 지붕높이는 용마루하단부터 도리하단까지의 높이가 한옥 깊이의 0.3 이상 0.5 이하가 되어야 한다.(준수) •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붕부의 최소 높이는 1.5m이상 이어야 한다.(준수) • 용마루, 내림마루, 추녀마루의 적새, 착고부고는 전통한옥의 구법을 준수하며 적새의 경우 5단을 넘지 않아야 한다. 내림마루와 추녀마루는 용마루와 같거나 낮아야 한다.(준수) • 지붕의 형태는 팔작지붕, 맞배지붕, 우진각 지붕 등 3가지 전통적인 지붕형태를 따르도록 하며 외경사 및 용마루가 없는 지붕 형태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금지) • 같은 건물동의 지붕형태는 가급적 동일한 형태를 사용한다. 단, 외관상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필지의 형태나 건물의 구조적 문제를 이유로 혼합할 수 있다.(허용) • 모임지붕(사모, 육모, 팔모)은 별채로 정자 등을 설치할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허용) • 맞배지붕일 경우 맞배 쪽으로 창을 내거나 풍판을 대는 것을 되도록 자제한다.(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장) 차양은 동판 등 처마의 곡선미가 잘 드러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동판 이외의 재료 사용 시 부식된 동판과 유사한 색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원색계열의 재료는 사용을 금지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상 필요로 맞배 쪽으로 창을 낼 경우 박공을 50cm 이상 돌출시키고 박공을 이중으로 대어 설치할 수 있으며, 풍판을 댈 경우 그 크기나 형태가 과하지 않아야 한다.(허용) • 합각벽은 전돌벽이나 와편벽, 판벽(나무) 외에도 전통적 소재로 다양하게 치장할 수 있다.(허용) • 합각벽에 문양을 사용할 때에는 백제왕도 고유의 문양이나 아름다움을 표현하도록 한다.(권장) • 합각벽에 원색의 마감재나 도색은 금한다.(금지) • 햇빛 및 우수의 차단, 미관을 위해 겹처마를 설치할 수 있다.(허용) • 차양의 설치는 자제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차양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지붕의 곡선미와 한옥의 외관을 해치지 않는 형태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권장) • 민가주택의 특성을 반영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단청의 사용을 금한다.(금지) • 기와는 전통한식 토기와 또는 전통기와와 같은 골크기를 가지며 검은색으로 마감된 시멘트기와를 사용할 수 있다.(허용) • 유약을 처리하여 반짝이는 기와 및 검은 색이 아닌 기와의 사용을 금지한다.(금지) • 고풍스러움을 주는 기존기와를 재사용하거나 한식 토기와를 사용하도록 한다.(권장) • 기와와 막새는 일체형이 아닌 분리형을 사용하도록 한다.(권장) • 백제식 기와의 특징인 짧은 암막새와 대통사지·공산성에서 출토된 연화·태극 문양의 수막새의 사용하도록 한다.(권장) • 백제 고유의 형태인 꺾음 팔작지붕(계단식 내림마루), 치미의 사용은 가능하나 과도한 형태나 크기를 지양한다.(허용)
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수) 한옥의 외벽은 흰색으로 마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황토색도 사용할 수 있다. • (준수) 반사유리, 원색계열의 도료와 재료, 고도의 경관을 해치는 재료 및 장식의 사용을 제한한다. • (준수) 한옥 입면을 가리는 별도의 장식과 구조의 설치는 금지한다. (개보수시 기존의 설치물도 제거하도록 한다.) • (권장) 외벽의 아랫부분은 사고석, 점토벽돌, 와편, 자연석 등 가능한 전통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전통무늬와 장식을 구현하는 것을 권장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벽체는 한옥의 수직적 요소가 잘 드러나는 심벽으로 하여야 한다. 단, 화방벽이나 판벽은 평벽으로 사용할 수 있다.(준수) • 벽체는 흙벽으로 하거나 황토벽돌을 사용하도록 한다.(권장) • 벽체외부로 드러나지 않게 시멘트벽돌, 단열재, 방수시트 등도 사용할 수 있다.(허용) • 한옥의 외벽은 흰색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단, 황토색은 허용한다.(준수) • 판벽(목재)이나 화방벽은 도색하는 것을 금한다.(금지) • 화방벽은 사고석, 전돌, 와편, 자연석, 흙 등 가능한 전통적인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준수) • 화방벽을 쌓을 경우, 상인방 끝까지 쌓는 온화방장보다는 중인방 이하까지만 쌓는 반화방장을 권장한다.(권장) • 축대가 있는 경우 축대석 쌓기 등으로 외벽재료와 구분하여야 한다.(준수) • 반사유리, 원색계열의 도료와 재료, 고도경관을 해치는 재료 및 장식의 사용을 금한다.(금지) • 한옥 입면을 가리는 별도의 구조물 및 시설물의 설치는 금지한다. 개보수시 기존의 설치물도 제거하도록 한다.(금지) • 하인방, 화방장, 합각벽 등 외벽하부에 문양 등을 넣어 장식하거나 치장할 때에 자연재료로 백제 고유의 형상이나 문양을 사용하도록 한다.(권장) • 담장이 건축물 외벽에 붙어있거나, 외벽이 대지경계선에 맞닿은 건축물에 담장을 설치할 경우, 담장과 중인방의 높이를 맞추어 등

		<p>일한 소재로 화방벽을 설치해야 한다.(준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층으로 건축하는 경우 수평부재로 층을 분명히 구분하여야 한다.(준수) • 층간에는 눈썹지붕 또는 난간을 설치하도록 한다.(권장)
창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수) 한옥의 창호는 전통적인 창살 문양과 형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 (준수) 창호의 재료는 목재를 비롯한 다양한 재료의 사용이 가능하다.(다만 목재를 제외한 재료는 목재색채와 무늬로 마감하여야 한다. • (준수) 대청의 전면을 제외한 창호 면적의 합은 전체 외부 면적의 50%가 되지 않도록 한다. (외부면 적이라 합은 기단상부에서 도리하 단까지를 의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옥의 창호는 전통적인 창살 문양과 형식을 사용하여야 한다.(준수) • 원색의 도료를 사용하는 것을 금한다.(금지) • 창틀 및 살의 재료는 목재를 사용하도록 하며 도색을 지양한다.(권장) • 외부에 드러나는 창호의 창틀 및 살은 목재로 마감하여야 한다.(준수) • 대청의 전면을 제외하고, 창호면적의 합은 전체 외부면적의 50%가 넘지 않아야 한다.(준수) • 창호지의 재료는 한지, 유지, 아크릴 한지, 유리 등 빛이 투과되는 재료여야 하며, 반드시 창살은 창호지보다 바깥 면에 있어야 한다.(준수) • 창살은 교살(빗살)을 권장한다.(권장) • 한식 시스템창호의 사용도 가능하며, 단열이나 방충을 위한 다중 창호나 방충망 설치도 가능하다. 단, 창호가 외부로 돌출되지 않아야 한다.(허용) • 궁판의 문양과 장식은 전통적 형태를 갖추도록 한다.(권장)
실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수) 대청을 설치할 경우 상부의 구조 및 지붕틀이 드러나는 연등천장으로 한다. • (권장) 실내에 설치하는 조명은 간접조명을 권장하며, 목재를 활용하여 조명기구를 차폐하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청 또는 거실의 조명은 간접조명을 사용하도록 한다.(권장) • 대청 또는 거실은 상부의 구조 및 지붕틀이 드러나는 연등천장으로 하여야 한다.(준수)
부속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수) 본체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속채를 별도 혹은 덧대는 방식으로 건축한다. • (준수) 부속채가 덧대어지는 방식 일 경우 지붕의 높이 및 형태를 달리하여 본채와 부속채가 구분되도록 한다. • (준수) 별도로 건축하는 경우 본지침을 준수하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체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속채를 별도 혹은 덧대는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준수) • 반침은 불박이장, 보일러실, 창고, 기타 안전시설 등의 용도로만 설치할 수 있다. 방, 거실, 다용도실, 현관, 화장실, 내부계단 등의 용도로 설치하는 것을 금한다.(금지) • 반침이 외벽으로 돌출될 경우 그 폭이 지붕 처마길이(겹처마 포함)의 2/3 이내여야 한다.(준수) • 반침을 대청이 있는 전면, 가로에 면한 입면, 창호 아래에 설치하는 것을 금한다.(금지) • 2층 한옥의 경우 반침은 1층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반드시 경사 지붕을 설치해야 한다.(준수) • 지붕의 높이 및 형태를 달리하여 본채와 부속채가 구분되어야 한다.(준수) • 보일러는 건축물 내부에 포함되어야 하며, 외벽에 부착하여 설치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림판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금지) • 별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본채와 동일하게 지침을 적용한다.(준수) • 별도로 소규모 창고나 화장실 등 부속적 용도의 시설을 수선하거나 설치할 경우 한옥에 어울리는 외관으로 디자인해야하며, 가로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준수)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수) 에어컨 등의 기타 부착물은 가로변으로 돌출되지 않게 하고 적절한 차폐시설을 설치 하여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한다. • (권장) 가스배관, 전기계량기 등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어컨 실외기 등의 기타 부착형 시설물은 가로변으로 돌출되지 않게 하고, 적절한 차폐시설을 설치하여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한다.(준수) • 가스 및 각종 배관, 전기계량기, 분전반 등의 시설물은 담장 혹은 벽 일부에 별도의 공간을 두어 차폐하되, 공간적 제약이 있는 경우 되도록 건물의 측면으로 이동하거나 담장 내부에 설치한다.(준수)

	<p>시설물은 담장 혹은 벽 일부에 별도의 공간을 두어 차폐 하는 것을 권장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장) 이동이 어려운 경우 되도록 건물외측면으로 이동하거나 담장 내부에 설치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에 설치되는 조명은 색온도는 5,800K 이하로 하며, 4,000K 내외를 권장한다.(준수) •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램프 및 난간 등을 설치할 경우에도 목재, 철재, 석재 이외의 재료의 사용과 도색을 금한다.(준수) • 팔지 내부의 옹벽은 지반에서 1.8m까지 사교석, 외편 점토벽돌을 사용하여 마감하여야 한다(준수), • 옹벽의 장식은 가급적 전통문양으로 마감하도록 한다.(권장)
<p>옥외 광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수) 한옥의 기둥을 가리는 연속된 광고물 부착을 금지한다. • (준수) 도리 윗부분에는 현판형태의 간판설치만 가능하고, 그 이외 유형의 간판은 도리 하단에 설치하도록 한다. • (준수) 한 상가당 광고판은 2개만 허용하며 한 광고판의 최대 크기는 0.25㎡를 넘지 않아야 한다. • (준수) 광고판에 대한 크기제한에도 불구하고 문간채 상부에 설치하는 목재로 제작된 현판 형태의 광고판은 이를 넘을 수 있다. 다만 폭은 최대 문간채 칸 사이의 길이까지이며, 높이는 문간채 칸 사이의 2/3이내 여야 한다. • (준수) 원색계열의 사용을 금지하며, 한옥과 어울리는 무채색 및 갈색계열을 사용하도록 한다. • (준수) 패널형태의 광고판을 지양하고 글자로만 구성된 광고물 설치를 권장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옥의 외벽과 기둥을 가리는 연속된 광고물, 또는 처마 위로 간판을 설치하여 지붕을 가리는 광고물의 부착을 금한다.(준수) • 도리 윗부분에는 현판형태의 간판설치만 가능하고, 그 이외 유형의 간판은 도리 하단에 설치하도록 한다.(준수) • 배경색으로 원색계열의 사용을 금지하며, 무채색 및 저채도계열의 색을 사용하도록 한다.(준수) • 글자에 원색계열의 색상을 사용할 경우 한 가지 색만 허용한다.(허용) • 부착형 패널간판을 사용할 경우 테두리는 검은색, 두께는 20cm 이하로 하며, 사진은 넣을 수 없다.(준수) • 금속, 목재 등 자연재료의 사용을 권장하며, 아크릴 등 합성수지를 부분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외관상 무리가 없어야 한다.(권장) • 글자 크기의 제한은 없으나 최대한 여백을 둘 것을 권장한다.(권장) • 한 상가당 광고판은 2개만 허용하며 한 광고판의 최대 크기는 0.25㎡를 넘지 않아야 한다. 글자형태로 된 광고물의 경우에는 가상의 사각형 테두리를 그 면적으로 한다.(준수) • 간접조명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점멸 LED, 색상이나 밝기가 변화하는 등 한옥과 어울리지 않는 광원을 사용할 수 없다.(준수) • 부착형 및 돌출형 간판 이외에 별도의 조명이 없는 높이 1m 이하의 주차금지 표시, 메뉴 안내용 이동식 광고판은 1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준수) • 광고판에 대한 크기제한에도 불구하고 문간채 상부에 설치하는 목재로 제작된 현판 형태의 광고판은 이를 넘을 수 있다. 다만 문간채 기둥 사이에 위치해야하며, 높이는 문간채 칸 폭의 1/3 이내여야 한다.(준수) • 동일 건축물에 부착된 개별 상가의 광고판은 높이 및 위치를 통일한다.(준수) • 현수막 등 간판 외 광고물의 부착 및 설치를 금지한다.(준수) • 영어, 일어 등 외국어 및 외래어의 사용을 자제한다.(권장) • 시에서 배포한 지정표시물, 문패 등은 광고물로 보지 않는다.(준수)

2. 한옥건축양식

<p>구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수) 한옥건축양식은 현대적 재료와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구조를 사용할 수 있다. • (준수) 처마는 외벽 중심선을 기준으로 최소 1m 이상 돌출되어야 한다. • (준수) 대청을 설치하는 경우 한옥과 유사한 상부구조로 구성하여야 한다. • (권장) 공학목재 등 가공된 형태의 목재의 사용을 권장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옥건축양식은 현대적 재료와 기술을 활용하여 한옥과 유사한 형태와 구조를 갖아야 한다.(준수) • 한옥건축양식은 2층 이하이며, 본체의 지붕이 한식기와외의 경사지붕이어야 한다.(준수) • 대청을 설치하는 경우 한옥과 유사한 상부구조로 구성하여야 한다.(준수) • 부속시설 및 별채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본채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준수) • 별도로 소규모 창고나 화장실 등의 부속시설을 수선하거나 설치할 경우에도 본채와 어울리는 외관으로 디자인하고, 가로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한다.(권장) • 목재의 사용을 권장한다. 공학목재 등 가공된 형태의 목재의 사용도 가능하다.(허용)
<p>기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수) 기단을 설치하는 경우, 최소 20cm 이상의 높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 (준수) 기단의 높이는 1m가 넘지 않아야 한다. • (권장) 기단은 외벽중심선에서 1m 이상 확보하고 석재 등 자연재료를 마감하는 것을 권장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단은 가능한 한옥의 일반적인 형태인 석축기단으로 한다.(권장) • 와적기단, 전축기단, 토단은 허용한다.(허용) • 나무데크나 가구식 기단의 설치 금지한다.(금지) • 기단은 자연석이나 장대석, 전돌, 기와, 흙, 경화마사토 등으로 마감하도록 한다.(권장) • 기단의 높이는 1m가 넘지 않아야 한다.(준수) • 기단의 끝선은 처마끝선 안으로 45cm 내외로 이격하도록 한다.(권장) • 기단의 외부마감 시 자연석과 장대석, 전돌, 기와 등 마감재료의 크기와 형태가 적절하도록 한다.(권장) • 기단의 상부바닥에 조명을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나 조명은 주광색 또는 백색이어야 한다.(준수)
<p>외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수) 실제 구조와 별도로 외관상 한옥과 유사하게 분절하도록 한다. • (준수) 반사유리, 원색계열의 도료와 재료, 고도의 경관을 해치는 재료 및 장식의 사용을 제한한다. • (준수) 사고석, 점토벽돌, 와편, 자연석 등 가능한 전통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가능한 전통 무늬와 장식을 구현한다. • (권장) 입면을 가리는 별도의 장식과 구조의 설치 금지한다. (개보수시 기존의 설치물도 제거하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구조와 별도로 외관상 한옥과 유사하게 수직·수평으로 분절해야 한다.(준수) • 외벽은 분절은 기둥부나 수평부재가 들어가는 부분에 목재를 덧대어 마감하여 표현해야 한다.(준수) • 한옥건축양식의 외벽은 흰색으로 마감하여야 한다.(준수) • 판벽(목재)이나 화방벽은 도색하는 것을 금지한다.(금지) • 축대가 있는 경우 축대석 쌓기 등으로 외벽재료와 구분하여야 한다.(준수) • 반사유리, 원색계열의 도료와 재료, 고도경관을 해치는 재료 및 장식의 사용을 금지한다.(금지) • 입면을 가리는 별도의 구조물 및 시설물의 설치 금지한다. 개보수시 기존의 설치물도 제거하도록 한다.(금지) • 2층으로 건축하는 경우 수평부재로 층을 분명히 구분하여야 한다.(준수) • 층간에는 눈썹지붕 또는 난간을 설치하도록 한다.(권장) • 한옥건축양식의 외벽을 한옥과 유사하게 상인방, 중인방, 하인방

		<p>3부분으로 나누어 구성하도록 한다.(권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장이 건축물 외벽에 붙어있거나, 외벽이 대지경계선에 맞닿은 건축물에 담장을 설치할 경우, 담장과 중인방의 높이를 맞추어 동일한 소재로 화방벽을 설치하도록 한다.(권장) • 하인방, 화방장, 합각벽 등 외벽하부에 문양 등을 넣어 장식하거나 치장할 때에 자연재료로 백제 고유의 형상이나 문양을 사용하도록 한다.(권장) • 화방벽을 쌓을 경우, 상인방 끝까지 쌓는 온화방장보다는 중인방 이하까지만 쌓는 반화방장을 권장한다.(권장)
<p>창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장) 창호는 전통적인 창살 문양과 형식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며, 재료는 목재를 비롯한 다양한 재료의 사용이 가능하다. • (권장) 목재색채와 무늬로 마감하는 것을 권장하며, 검은색 혹은 회색계열의 창호도 사용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문틀 및 창살의 재료는 목재로 하도록 한다.(권장) • 창호의 살은 교살(빗살)을 포함한 전통적인 창살 문양과 형식을 사용하도록 한다.(권장) • 유리창 등 다양한 창문의 사용이 가능하나, 창틀과 창살에 목재 고유의 색이나 그와 유사한 색상, 질은 갈색 및 검정색을 제외한 색상의 사용을 금한다.(준수) • 외부에는 전통창호를 설치하도록 한다.(권장) • 외부에 통유리창은 설치할 수 있으나, 통유리문은 금한다. 단, 통유리문 바깥으로 나무 창살이 있거나 전통창호 형태의 덧문을 설치할 경우에는 가능하다.(금지) • 유리창문에 창살을 넣을 경우 창살이 외부에 돌출되어야 한다.(준수)
<p>지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수) 지붕높이는 처마하단을 기준으로 한옥 깊이의 0.3 이상이되 0.5 이하가 되도록 한다. • (준수) 전통기와 또는 전통 기와와 유사한 골 크기를 가진 검은색 시멘트 기와를 사용하여야 한다. • (준수) 지붕의 형태는 팔작지붕, 맞배지붕, 우진각 지붕 등 전통적인 지붕형태여야 한다. (외경사 및 용마루가 없는 지붕 형태는 원칙적으로 금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문틀 및 창살의 재료는 목재로 하도록 한다.(권장) • 창호의 살은 교살(빗살)을 포함한 전통적인 창살 문양과 형식을 사용하도록 한다.(권장) • 유리창 등 다양한 창문의 사용이 가능하나, 창틀과 창살에 목재 고유의 색이나 그와 유사한 색상, 질은 갈색 및 검정색을 제외한 색상의 사용을 금한다.(준수) • 외부에는 전통창호를 설치하도록 한다.(권장) • 외부에 통유리창은 설치할 수 있으나, 통유리문은 금한다. 단, 통유리문 바깥으로 나무 창살이 있거나 전통창호 형태의 덧문을 설치할 경우에는 가능하다.(금지) • 유리창문에 창살을 넣을 경우 창살이 외부에 돌출되어야 한다.(준수)
<p>부착 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수) 에어컨 등의 기타 부착물은 가로변으로 돌출되지 않게 하고 적절한 차폐시설을 설치하여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한다. • (권장) 가스배관, 전기계량기 등의 시설물은 담장 혹은 벽 일부에 별도의 공간을 두어 차폐하는 것을 권장한다. • (권장) 이동이 어려운 경우 되도록 건물의 측면으로 이동하거나 담장 내부에 설치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에 설치되는 조명은 색온도는 4000K 내외가 되도록 한다.(권장) •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램프 및 난간 등을 설치할 경우에도 목재, 철재, 석재 이외의 재료의 사용과 도색을 자제한다.(권장) • 에어컨 실외기 등의 기타 부착형 시설물은 가로변으로 돌출되지 않게 하고, 적절한 차폐시설을 설치하여 경관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준수) • 가스 및 각종 배관, 전기계량기, 분전반 등의 시설물은 담장 혹은 벽 일부에 별도의 공간을 두어 차폐되며, 공간적 제약이 있는 경우 되도록 건물의 측면으로 이동하거나 담장 내부에 설치하여야 한다.(준수) • 필지 내부의 옹벽은 지반에서 1.8m까지 사고석, 와편, 점토벽돌 등을 사용하여 전통적인 형태로 마감하도록 한다.(권장)

<p>옥외 광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수) 기둥을 가리는 연속된 광고물 부착을 금지한다. • (준수) 한 상가당 광고판은 2개만 허용하며 한 광고판의 최대 크기는 0.25㎡를 넘지 않아야 한다. • (준수) 원색계열의 사용을 금지하며, 한옥과 어울리는 무채색 및 갈색계열을 사용 하도록 한다. 강조색으로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계열은 사용할 수 있다. • (권장) 패널형태가 아닌 글자로만 구성된 광고물 설치를 권장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기둥과 입면을 가리는 연속된 광고물 부착을 금지한다.(금지) • 한 상가당 광고판은 2개만 허용한다.(허용) • 주 간판은 폭이 최대 3m가 넘지 않도록 하며, 높이는 1m 이하로 1개만 설치하여야 한다.(준수) • 주 간판 외 부착형 간판 및 돌출형 광고판의 최대 크기는 0.25㎡를 넘지 않아야 하며, 한 업소당 하나만 설치할 수 있다.(허용) • 글자형태로 된 광고물의 경우에는 가상의 직사각형 테두리를 그 면적과 길이로 한다.(준수) • 부착형 패널간판의 경우 테두리는 간결한 형태로, 두께는 30cm 이하여야 한다.(준수) • 배경색으로 원색의 사용을 금지하며, 무채색 및 저채도계열의 색을 사용하여야 한다.(준수) • 글자에 원색계열의 색상을 사용할 경우 한 가지 색만 허용한다.(허용) • 금속, 목재 등 자연재료의 사용을 권장하며, 아크릴 등 합성수지를 부분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외관상 무리가 없어야 한다.(권장) • 글자 크기의 제한은 없으나 최대한 여백을 둘 것을 권장한다.(권장) • 간접조명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점멸 LED, 색상이나 밝기가 변화하는 광원을 사용할 수 없다.(금지) • 부착형 및 돌출형 간판 이외에 별도의 조명이 없는 높이 1m 이하의 주차금지 표시, 메뉴 안내용 이동식 광고판은 1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허용) • 동일 건축물에 부착된 개별 상가의 광고판은 높이 및 위치를 통일하여야 한다.(준수) • 사진, 현수막 등 간판 외 광고물의 부착 및 설치를 금지한다.(금지) • 영어, 일어 등 외국어 및 외래어의 사용을 자제한다.(권장) • 시에서 배포한 건축물과 점포에 대한 지정표시물, 문패 등은 광고물로 보지 않는다.(허용)
-------------------------	--	--

3. 대문 및 담장

<p>대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수) 대문은 목재를 사용한 전통양식으로 하고 전통문양의 철재장식을 사용하여 장식할 수 있으며, 한옥 및 담장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 (권장) 대문의 좌우에 기둥을 세울 경우 외편, 사고석 등 전통적인 재료로 마감할 것을 권장한다. • (권장) 차고문을 설치하는 경우 프레임이 도드라지지 않고 목재로 마감된 유형으로 설치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문은 한옥 및 담장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준수) • 문과 지붕이 모두 없는 출입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대문으로 보지 않는다. 또한 지붕이 없을 경우 문의 높이는 담장과 같아야 한다.(준수) • 대문 상부에 지붕을 얹힐 경우, 한식지붕으로 한옥의 지붕기준 중 기와와 치미의 사용에 대한 기준을 준용한다. 또한 본체가 한옥이거나 한옥건축양식일 경우, 그 재료와 형태는 본체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한다.(준수) • 대문은 목재를 사용한 전통양식으로 하고, 전통문양의 철재장식을 사용하여 장식하는 것을 권장한다.(권장) • 대문에 목재보호를 위한 용액의 도포는 가능하나, 그 밖에 단청이나 도료 등을 사용한 채색을 금한다.(준수) • 지붕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며(권장), 기와지붕이 아닌 경우 설치를 금한다.(준수) • 지붕이 없는 대문의 좌우에 기둥을 세울 경우 외편, 사고석 등 전통적인 재료로 마감할 것을 권장한다.(권장) • 대문의 구조는 솥을삼문, 솥을대문, 사주문, 알까문 모두 가능하나 사주문을 권장한다.(권장) 단, 일주문의 설치는 금한다.(준수) • 차고문을 설치하는 경우 프레임이 도드라지지 않게 목재로 마감된 형태로 설치한다.(권장) • 대문에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한옥의 옥외광고물 설치기준을 준용한다.(준수) • 대문에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기타 설치물이나 장식물은 저재도의 전통적 형태로 할 것을 권장한다.(권장)
<p>담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수) 담장의 높이는 인접한 한옥 외벽을 고려하고, 그 너머로 한옥의 몸체가 드러나도록 1.8m 이하로 한다. • (준수) 담장의 형식은 장대석, 사고석, 점토벽돌, 외편, 자연석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전통무늬와 장식을 구현한다. • (권장) 담장 상부에는 가급적 기와를 얹는 것을 권장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장의 높이는 인접한 한옥 외벽을 고려하고, 그 너머로 한옥의 외형이 드러나도록 최대 1.8m 이하로 한다(준수), 1.5m 이하를 권장한다(권장) • 담장의 마감은 사고석, 점토벽돌, 외편, 자연석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전통적 형태를 구현한다.(준수) • 과하게 다양한 재료를 혼합 · 사용하거나 복잡한 문양으로 치장하는 것을 금한다.(준수) • 담장 상부에는 기와를 얹도록 한다.(준수) • 담장에 사용하는 기와는 한옥의 기와기준을 준용한다.(준수) • 건축물이 한옥이거나 한옥건축양식일 경우 본체와 동일한 기와 · 막새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권장) • 담장의 전면과 측면, 후면이 모두 통일성 있는 구조와 재료로 이루어지도록 한다.(준수) • 인접필자에 한식담장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 높이와 위치를 동일하게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다만, 문양과 재료가 동일할 필요는 없다.(권장) • 건축물과 담장 사이의 공간에 지붕을 덮거나 이어 내부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한다.(준수) • 담장과 건축물은 분리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건축물의 외벽이 대지경계선에 맞닿아 있거나 행랑채처럼 별도로 구성된 건축물이 도로에 면하였을 경우 담장과 건축물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재료와 형태를 통일하도록 권장한다.(권장) • 담장에 인공도료 등을 사용한 채색을 금한다.(준수) • 담장을 장식할 경우 꽃담장과 같은 전통적인 형태와 색상을 권장한다.(권장) • 주차장 또는 차량이 통과하는 출입구에 담장을 설치할 경우 운전자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권장) • 각종 배관, 전기계량기, 통신함 등 외부 부착물 등은 담장 안쪽에 설치하거나 따로 담장 내부에 함을 만들어 가급적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설계 시 고려하도록 한다.(권장)

4. 가로변 건축물 외관 정비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수) 사고석, 점토벽돌, 외편, 자연석 등 가능한 전통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가능한 전통무늬와 장식을 구현하여야 한다. • (준수) 반사유리, 원색계열의 도료와 재료, 고도의 경관을 해치는 재료 및 장식의 사용을 금지한다. • (준수) 건축물의 입면은 일정한 간격(모듈)이 반복되는 유형이어야 한다. • (준수) 가로경관개선 지원을 받은 입면을 가리는 별도의 장식과 구조의 설치는 금지한다. (개보수시 기존의 설치물도 제거하도록 한다) • (권장)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유물을 모티브로 하여 디자인된 재료의 사용을 권장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사유리패널, 광택이 있는 소재, 무채색이 아니거나 형태나 문양이 복잡한 타일 등 고도의 경관을 해치는 재료 및 장식의 사용을 금지한다. 타일을 부착할 경우, 전돌타일이나 검은색 또는 진회색의 타일을 사용해야 한다.(준수) • 2층 이상은 무광의 전돌타일로 마감하는 것을 권장한다.(권장) • 적벽돌이나 콘크리트블럭과 같은 조적조는 회벽과 유사한 형태로 마감하거나 전돌타일을 외벽에 부착할 것을 권장한다.(권장) • 콘크리트 외벽일 경우 현대적 소재 또는 형태의 타일이나 장식을 제거하고 전통적 형태의 외장재로 변경하거나 노출콘크리트를 권장한다.(권장) • 건축물의 외벽은 한옥의 외벽과 유사한 형태이거나, 차분하고 절제된 형태의 디자인이어야 한다. 단, 개별적 장소성과 역사적 특성을 고려한 디자인은 가능하다.(준수) • 건축물의 입면을 가리거나 별도의 현대적·이국적 구조물 및 시설물의 설치는 금지한다. 개보수시 기존의 설치물도 제거하도록 한다.(준수) • 공주의 고유성이나 전통적 이미지를 저해하는 장식은 제거하도록 한다.(준수) • 2층 이상의 건축물은 목재와 같이 전통적 소재의 수평부재로 층을 구분하는 것을 권장한다.(권장) • 건축물의 외벽을 새로이 도색할 경우, 채도가 낮은 색상의 도료(면셀 표색 계상 채도 4 이하)를 사용하도록 한다. 무채색(채도 0)의 도료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준수) • 시설물 차폐를 목적으로 가림시설물의 설치는 권장하며, 이 경우에 백제 및 공산성, 무령왕릉을 모티브로 한 전통적 무늬와 형태를 권장한다.(권장) • 가로변 1층의 입면은 한옥의 특성이 드러날 수 있는 디자인이어야 한다.(준수) • 건축물의 저층부(1층 또는 1·2층)는 한옥형 외벽과 동일한 형태로 개선할 것을 권장한다.(권장) • 실제 구조와 별도로 외관상 한옥과 유사하게 분절하도록 하며, 기둥부나 수평부재가 들어가는 부분에 목재를 덧대어 마감한다.(권장) • 상인방, 중인방, 하인방 3부분으로 나누어 구성하는 것과 층을 구분하기 위해 눈썹지붕 또는 난간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권장) •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 그 구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권장) • 1층부를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할 경우 최대한 개방성을 확보하도록 한다.(권장) • 통유리벽 또는 잡식 통유리창을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나 기둥간격 이내로 목재/등 또는 목재로 마감된 기둥으로 분절해야 한다.(준수) • 출입문은 목재와 같이 광택이 없는 소재로 마감하여야 하며, 광고 목적으로 그림이나 글씨 등을 표기하는 것을 금한다. 목재로 문틀과 창살을 제작하거나 덧붙여 마감하는 것을 권장한다.(준수) • 1층부 간판은 한옥건축양식의 경관관리 기준 중 옥외광고물의 기준을 준용한다.(준수)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물차양의 설치는 검은색에 한하여 허용한다.(준수) • 복잡하거나 곡선형 평면은 직선·직각의 형태로 그 구조를 개선할 것을 권장한다.(권장)
<p>창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장) 창호는 전통적인 창살 문양과 형식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며, 재료는 목재를 비롯한 다양한 재료의 사용이 가능하다. • (권장) 목재색채와 무늬로 마감하는 것을 권장하며, 검은색 혹은 회색계열의 창호도 사용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창호, 유리창 등 다양한 창문의 사용이 가능하나, 사각형이 아니거나 곡면이거나 기타 외관상 부적합하다고 여겨지는 형태를 금한다.(준수) • 창틀과 창살은 목재를 권장하며, 목재를 사용할 경우 고유의 색상과 무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마감해야 한다. 그밖에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검은색으로 마감하도록 한다.(준수) • 창문은 기둥간격을 초과하여 연속되게 설치하는 것을 금하고, 건축물의 기둥간격 이내로 분절하도록 한다.(준수) • 건축물의 창문은 최대 2가지 이하의 크기와 형태로 통일할 것을 권장한다.(권장) • 전통창호의 설치를 권장하며, 그 문양은 교살(빗살)을 권장한다.(권장) • 베란다가 있거나 돌출형 난간이 있는 경우, 한식 난간과 창호를 설치하도록 한다.(권장) • 계단이나 통로에 수직으로 설치되어 있는 유리창이 곡선형일 경우, 구조상 문제가 없을 시에는 평면으로 교체하도록 한다.(권장) • 계단이나 통로에 설치되어 있는 유리창은 전통적 형태의 창살을 덧대어 설치한다.(권장)
<p>지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수) 지붕의 색상은 검은색계열을 사용하여야 한다. • (준수) 지붕의 마감 재료는 반짝이거나 무늬가 있지 않아야 한다. • (권장) 전통기와 혹은 개량 기와의 사용을 권장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층 이하의 건축물은 경사지붕을 설치하도록 한다.(준수) • 지붕의 마감 재료는 반짝이거나(광택이 있거나) 복잡한 형태가 아니어야 한다.(준수) • 경사지붕은 검은색 또는 진회색의 소재로 마감하여야 한다.(준수) • 경사지붕을 설치할 경우 한식 지붕의 형태로 하며, 기와는 전통기와 혹은 개량 기와를 사용한다.(권장) • 평지붕 옥상부의 과도한 장식이나 불필요한 측벽, 불법 증축부를 제거해야 하며, 외부에 드러나는 시설물이 없도록 한다. 부득이하게 설치해야 할 경우 해당시설물은 차폐되도록 해야 한다. 옥상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때도 동일하다. 다만 옥상정원이나 간이텃밭, 화분 등 부감경관에 위해가 되지 않는 것은 제외한다.(준수) • 평지붕의 경우 초록색 우레탄과 같은 원색의 방수도로로 마감하는 것을 금지한다. 다만, 무광·무채색으로 마감할 경우 우레탄의 사용도 가능하며, 아스팔트 방수시트 등을 사용 후 회색 폴리우레아(질은 색 권장) 등과 같은 무채색의 도로로 마감하는 공법이나 지붕녹화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준수) • 지붕에 태양광패널, 전자통신시설, 환기설비 등을 설치할 경우 가로변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도록 한다.(권장)

옥외
광고

- (준수) 동일 건축물에 부착된 개별 상가의 광고판은 높이 및 위치를 통일하여 고도에 어울리는 경관을 형성한다.
- (준수) 한 상가당 광고판은 2개만 허용하며 한 광고판의 최대 크기는 3㎡를 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로형 간판의 설치를 금지한다.
- (준수) 돌출형 광고판의 크기는 0.5m × 0.5m 이내여야 하며 한 업소당 하나만 설치한다.
- (준수) 원색 사용을 금지하며, 배경색은 무채색 및 저채도의 색을 사용하고 상호명에 흰색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흰색바탕에 무채색 및 저채도 색의 상호명도 가능)
- (준수) 고정된 간판 외 조명이 없는 1m 이하의 주차 금지 표시 혹은 메뉴 안내용 광고판 1개만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이동 가능한 형태의 간판만 가능)
- (준수) LED 등 발광하는 형태의 광고물 설치를 금지하며, 간접조명 혹은 이와 유사한 형태의 조명이 사용된 간판을 사용하도록 한다.
- (권장) 패널형태의 광고판을 지양하고 글자로만 구성된 광고물 설치를 권장한다.
- 한 상가당 광고판은 2개만 허용하며 주 간판은 폭이 최대 3m가 넘지 않도록 하며, 높이는 1m 이하로 1개만 설치할 수 있다.(준수)
- 주 간판 외 부착형 간판 및 돌출형 광고판의 최대 크기는 0.25㎡를 넘지 않아야 하며, 한 업소당 하나만 설치한다.(준수)
- 글자형태로 된 광고물의 경우에는 가상의 직사각형 테두리를 그 면적과 길이로 한다.(준수)
- 부착형 패널간판의 경우 테두리는 간결한 형태로, 두께는 30cm 이하로 한다.(준수)
- 부착형 및 돌출형 간판 이외에 별도의 조명이 없는 높이 1m 이하의 주차금지 표시, 메뉴 안내용 이동식 광고판은 1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준수)
- 배경색으로 원색계열의 사용을 금지하며, 무채색 및 저채도계열의 색을 사용하도록 한다. 또한 글자에 원색계열의 색상을 사용할 경우 한 가지 색만 허용한다.(준수)
- 금속, 목재 등 자연재료의 사용을 권장하며, 아크릴 등 합성수지를 부분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외관상 무리가 없어야 한다.(권장)
- 글자 크기의 제한은 없으나 최대한 여백을 둘 것을 권장한다.(권장)
- 간접조명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점멸 LED, 색상이나 밝기가 변화하는 광원을 사용할 수 없다.(준수)
- 동일 건축물에 부착된 개별 상가의 광고판은 높이 및 위치를 통일한다.(준수)
- 사진, 현수막 등 간판 외 광고물의 부착 및 설치를 금지한다.(준수)
- 영어, 일어 등 외국어 및 외래어의 사용을 자제한다.(권장)
- 시에서 배포한 지정표시물, 문패 등은 광고물로 보지 않는다.(준수)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2. (생략)</p> <p>3. "한옥"이란 주요구조부가 목구조방식이고 <u>한식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한식기와, 볏짚, 목재, 흙 등 자연재료로 마감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u></p> <p>4.·5. (생략)</p>	<p>제2조(정의)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u>한식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u> ----- ----- -----.</p> <p>4.·5. (현행과 같음)</p>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우리시 신축 건물 및 도로명 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02. 01.

공주시장

- 도로명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상촌길 21 (봉정동) 외 14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토지과(☎840-8480)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6. 02. 01.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 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세부내역

순번	지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자	도로명 부여사유	공정장부 주소원래비		
1	충청남도 공주시 방정동 483	충청남도 공주시 방정동 21(방정동)	신축	2016.02.01	신축	201.000112	마음이 못쪽에 자리하였다 해서 생긴 자연마을 명칭 활용	고시후 공도발송예정
2	충청남도 공주시 월미동 432-4	충청남도 공주시 월미농업단지길 67-1(월미동)	신축	2016.02.01	신축	201.31023	월미농업단지 존칭에 따른 도로명 부여	고시후 공도발송예정
3	충청남도 공주시 송선동 282-2	충청남도 공주시 평안리길 103(송선동)	누락	2016.02.01	누락	201.000112	누에를 많이 지은 곳이라 하여 생긴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고시후 공도발송예정
4	충청남도 공주시 우유읍 백곡리 36-11, 36-1	충청남도 공주시 우유읍 우구외리과로 33-37	신축	2016.02.01	신축	201.000112	행정구역 명칭과 도로특성 반영	고시후 공도발송예정
5	충청남도 공주시 우유읍 백곡리 36-1	충청남도 공주시 우구읍 우구외리과로 33-9	신축	2016.02.01	신축	201.000112	행정구역 명칭과 도로특성 반영	고시후 공도발송예정
6	충청남도 공주시 우유읍 구계리 151	충청남도 공주시 우구읍 양지동길 25-1	신축	2016.02.01	신축	201.00020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고시후 공도발송예정
7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이인리 239-13, 239-12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우룡길 2리 3	누락	2016.02.01	누락	201.000112	물우물이 있다 하여 생긴 자연마을 명칭 활용	고시후 공도발송예정
8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달산리 423, 11-1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감바위로 140	누락	2016.02.01	누락	201.000112	주방~이인 가는길 도로 옆에 감바위라는 유적물이 있어 유물의 명칭 활용	고시후 공도발송예정
9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홍간리 388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농바위길 5-5	신축	2016.02.01	신축	201.0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고시후 공도발송예정
10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마영리 641-37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고비고개길 11-4	신축	2016.02.01	신축	201.000112	미양~내를 사이에 고개(봉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고비고개 길이라 부여	고시후 공도발송예정
11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홍촌리 437-1, 435-2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돌무늬길 93	신축	2016.02.01	신축	201.000112	배우고 있는 언덕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명칭이 있는 모퉁이로 붙여	고시후 공도발송예정
12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안곡리 371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은행동길 102-23	누락	2016.02.01	누락	201.0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고시후 공도발송예정
13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인동리 443-1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방지동길 77	신축	2016.02.01	신축	201.0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고시후 공도발송예정
14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월산리 528-2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중앙리과사로 443	신	2016.02.01	신	201.000112	평안리(과)과(리)를 합하는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중앙리(과)사로 부여	고시후 공도발송예정
15	충청남도 공주시 신동면 명소리 204-1	충청남도 공주시 신동면 사정골길 23	신	2016.02.01	신	201.00020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고시후 공도발송예정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우리시 건물등의 멸실에 따라 도로명주소 폐지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및 제25조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02. 01.

공주시장

- 도로명주소 : 충남 공주시 이인면 우릉골2길 3 외 3건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 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토지과(☎840-8480)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6. 02. 01.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등에 의거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세부내역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일	폐지사유	비고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이인리 239-12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우룡골2길 3	2016.02.01	건물말소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이인리 239-12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우룡골2길 3-1	2016.02.01	건물말소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이인리 239-13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우룡골2길 5	2016.02.01	건물말소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이인리 239-13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우룡골2길 5-1	2016.02.01	건물말소	

공인 신조 및 폐기 공고

공주시 공인조례 제2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을 신조,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을 폐기하고, 동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5일

공 주 시 장

1. 신조 및 폐기 사유 : 마모에 따른 공인 교체
2. 신조 및 폐기 공인 인영

소 관 부서명	공인명	구분	인 영	규 격 (cm)	적용일 (비 고)
금학동	공주시 금학동장인 민원실전용	신조		2.1×2.1 (정방형) 훈민정음체 /우레탄	2016. 2. 15. (인증기)
		폐기		2.1×2.1 (정방형) 전서체 /금속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을 위한 공람·공고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포함]

공주시 태봉동 455-3번지 일원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포함]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16. 2. 15.

공 주 시 장

1. 공람 기간 : 2016. 2. 15 ~ 2. 29. (14일간)
2. 공람 장소 : 공주시 도시정책과 도시계획팀(☎ 041-840-8550)
금학동주민센터(☎ 041-840-2923)

3. 주민의견 제출

- 제출기한 : 2016. 2. 29. 18:00 ○ 제 출 처 : 공람 장소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이용

4. 공람내용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가.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설	①	공공청사	항공대 및 고속도로순찰대	충청남도 공주시 태봉동 455-3번지 일원	-	증)12,859	12,859	-	

나.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공공청사	신설 : 12,859㎡	· 충남지방경찰청 항공대 및 고속도로 순찰대 이전 부지 조성

5. 기 타

- 가. 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안)은 행정절차가 현재 진행중이며 본 결정(변경)(안)이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 나. 향후 행정절차(공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행 중 본 공람·공고내용과 다르게 결정될 수 있으며, 공람장소에서 필사 및 사진촬영은 금지합니다.
- 다. 관련 도면은 공람장소에 비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시정책과 도시계획팀(☎041-840-855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공고 제2016-201호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5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주시 조직개편과 업무이관에 따른 귀농인지원위원회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정비와 인용된 상위법 정비, 그 밖에 조문을 법령 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농업인 규정 상위법령 용어 정비(안 제2조 제5호)
- 나. 귀농인지원위원회 인원 및 당연직, 위촉직 위원 변경(안 제3조 제2항~제3항)
- 다. 귀농인지원위원회 기능 추가(안 제4조 제3호)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시정발전연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성장전력사업단 시정발전연구과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공주시청) / 우편번호 : 32552

전화 : 041-840-8748 / FAX : 041-840-2338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귀농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를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당연직위원은 부시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 축산과장, 농촌진흥과장, 기술보급과장, 산림과장, 시정발전연구과장으로 한다.” 를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성장전략사업단장, 토지과장, 시정발전연구과장, 농촌진흥과장으로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3호 중 “농민단체 대표” 를 “귀농인단체협의회,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농촌체험관광협회 추천인 “으로 한다.

제4조제3호 중 “귀농인의 고충처리 협의” 를 “귀농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 귀촌 홍보” 로 한다.

【붙임 2】

공주시 귀농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 (생략)</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u>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u>」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p>제3조(귀농인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생략)</p> <p>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u>15명 이내의</u>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p> <p>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u>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 축산과장, 농촌진흥과장, 기술보급과장, 산림과장</u>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2. (생략) 	<p>제1조. (현행과 같음)</p> <p>제2조(정의)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 「<u>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u>」 제3조에 ----- -----. <p>제3조(귀농인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10명 이내의</u> ----- -----.</p> <p>③ ----- ----- ----- <u>성장전략사업단장, 토지과장, 시정발전연구과장, 농촌진흥과장</u>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2. (현행과 같음)

<p>3. <u>농민단체 대표</u></p> <p>4. (생략)</p> <p>④ ~ ⑤ (생략)</p> <p>제4조. (생략)</p> <p>1. ~ 2. (생략)</p> <p>3. <u>귀농인의 고충처리 협의</u></p> <p>4. ~ 6. (생략)</p> <p><u>제7조 ~ 제13조</u> (생략)</p>	<p>3. <u>귀농인단체협의회, 농촌체험휴양 마을협의회, 농촌체험관광협회 추 천인</u></p> <p>4. (현행과 같음)</p> <p>④ ~ ⑤ (현행과 같음)</p> <p>제4조. (현행과 같음)</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귀농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 귀촌 홍보</u></p> <p>4. ~ 6. (현행과 같음)</p> <p><u>제7조 ~ 제13조</u> (현행 제7조부터 제13 조까지와 같음)</p>
--	---

공주시 공고 제2016-205호

「공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5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 자전거 대행진 행사를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 정한 조례에 보조금 지출근거를 마련하고
 - 자전거 이용자의 무료임대료를 카드발급 비용과 본인 확인 인 증료까지 포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사업비 지원근거 마련

- 자전거 대행진 등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행사와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명시 (제15조)

나. 자전거 관련 무료 범위확대

- 시민자전거 임대료만 있었으나, 카드발급비용, 본인 확인 인 증료를 추가하여 자전거이용활성화를 도모함(제18조제3항제3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3월 6일까지 공주시장(참조 : 교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1) 전자우편(이메일) : khi001@korea.kr
- 2) 주소 : (우32552) 공주시 봉황로 1 (교통과)
- 3) 팩스 : 041-840-2328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교통과(전화 : 041-840-850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을 “자전거대행진 등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관련 행사와” 로 한다.

제18조제3항제3호 중 “임대료” 를 “임대료(카드발급 비용, 본인 확인 인증료 등 포함)”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u>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u>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1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 - <u>자전거대행진 등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관련 행사</u>와 ----- ----- -----.</p>
<p>제18조(시민자전거의 운영) ① · ② (생략)</p> <p>③ 제1항의 시민자전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p> <p>1. · 2. (생략)</p> <p>3. 시민자전거의 <u>임대료</u>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며 이용후 반드시 가까운 자전거보관소에 반납하여야 한다.</p> <p>4. ~ 6. (생략)</p>	<p>제18조(시민자전거의 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u>임대료(카드발급 비용, 본인 확인 인증료 등 포함)</u>----- -----.</p> <p>4. ~ 6. (현행과 같음)</p>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공주시 금학동 105-1번지 외 6필지에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 인가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의견수렴을 위하여 공람·공고합니다.

2016. 2. 15.

공 주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공주시 금학동 105-1번지와 6필지
2. 사업내용

사업의 종류	사업명칭	사업내용	비고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사업	금학동 생태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노외주차장 조성 면적 4,238㎡, 주차면수 87면	

3.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1
- 성 명 : 공주시장(교통과)

4. 사업기간 : 인가일로부터 ~ 2016년 12월 30일

5. 공람 기간 : 2016. 2. 15. ~ 2. 29. (14일간)

6. 공람 장소 : 도시정책과 도시계획팀(☎ 041-840-8550)

교통과 교통안전팀(☎ 041-840-8495)

금학동주민센터(☎ 041-840-2923)

7. 주민의견 제출

- 제출기한 : 2016. 2. 29. 18:00
- 제출처 : 공람 장소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이용

8. 사용 또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외 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구분	주소	성명	
합계				4,532	4,238						
1	금학동	105-3	전	879	879	공주시	봉황로 1				
2	금학동	105-7	전	37	31	공주시	봉황로 1				
3	금학동	104	전	251	220	공주시	봉황로 1				
4	금학동	105-1	답	2661	2630	공주시	봉황로 1				
5	금학동	105-2	전	376	376	공주시	봉황로 1				
6	금학동	105-6	전	276	50	공주시	봉황로 1				
7	금학동	105-5	전	52	52	공주시	봉황로 1				